

| | |
|--|---|
| <p>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6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8명 2. 본청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 : 7,351명 <p>제 3 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교육위원회 의사국 · 본청(직속기관 포함) ·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의사국) ①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둔다. ②의사국에 의사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의사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④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p> <p>제 3 조(하부조직) 의사국에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 4 조(직원의 정원)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p> <p>제 5 조(사무분장) ①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서 · 보안 · 관인의 관리 3. 소관예산의 편성 ·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수급관리 5. 의전 · 행사 · 홍보에 관한 사항 6. 경비 ·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 7.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 8. 기타 의사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의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본회의 소집 ·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p> |
|--|---|

- 2.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의 처리
 - 3.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 4.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 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의 처리
 - 6.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 7. 소관자치법규의 정비
 - 8.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 9. 의안·청원 관련자료의 수집·연구·검토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 제 6 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5조중 “주무계장”을 “의정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중학교(남부)의 강서중학교의 명칭란중 “강서중학교”를 “세일중학교”로 하고, 영등포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영등포여자중학교”를 “영원중학교”로 하며, 중학교(강동)의 풍납여자중학교의 명칭란중 “풍납여자중학교”를 “풍성중학교”로 한다.

별표 5중 특수학교의 서울정문학교란 다음에 서울광진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학교

| | | |
|---|--------|----------------|
| 3 | 서울광진학교 | 광진구 구의동 587-52 |
|---|--------|----------------|

별표 7중 유치원(서부)의 서울상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북성유치원 및 서울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남부)의 서울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영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동)의 서울가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세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서울잠신초등학

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성동)의 서울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사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치원(서부)

| | | |
|---|----------------|---------------|
| 7 | 서울북성유치원 | 서대문구 북아현동 215 |
| 8 | 서울용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마포구 대흥동 51 |

유치원(남부)

| | | |
|---|----------------|----------------|
| 8 | 서울영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3 |
|---|----------------|----------------|

유치원(강동)

| | | |
|---|----------------|---------------|
| 8 | 서울세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송파구 오륜동 89-23 |
| 9 | 서울잠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송파구 잠실동 22-10 |

유치원(성동)

| | | |
|---|----------------|---------------|
| 7 | 서울사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성동구 사근동 291-5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변경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중 직무분야 교육위원회 의안조사관란을 삭제하고, 학생수련담당관의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의 임용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